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정보경	950404-*****		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의뱀	보수월액(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	
01월	0	0	0	0	
02월	0	0	0	0	
03월	0	0	0	0	
04월	0	0	0	0	
05월	0	0	0	0	
06월	0	0	0	0	
07월	0	0	0	0	
08월	0	0	0	0	
09월	83,140	8,520	0	0	
10월	83,140	8,520	0	0	
11월	83,140	8,520	0	0	
12월	83,140	8,520	0	0	
연말정산	0	0			
합계	332,560	34,080	0	0	
총합계				366,640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보경	950404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0
06월	0	0
07월	0	0
08월	0	0
09월	112,180	0
10월	112,180	0
11월	112,180	0
12월	112,18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접	0	
실업크리	0	
합계	448,720	0
	448,720	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정보경	950404-*****	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		지출금액 계
2-90-49*	오성****	일반	198,800
7-62-20*	미소****	일반	12,900
7-27-00*	백세****	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2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14,2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14,2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정보경	950404-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81,790	0	340,330	0	422,120
3월분	18,890	0	44,800	0	63,690
4~7월분	36,900	0	180,000	0	216,900
그외 (1~2월,8~12월분)	26,000	0	115,530	0	141,53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26,000	0	18,890	36,900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일반	0	0	0	0	81,790
			0	0	0	0	
			63,830	23,700	43,600	49,600	
신용카드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대중교통	27,500	0	0	0	208,230
			0	0	0	0	
			0	28,000	1,200	3,700	
신용카드	주식회사 카카오뱅크 (375-88-00197)	대중교통	39,600	21,300	38,300	0	132,100
			0	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정보경	950404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4,236,827	150,000	0	0	4,386,827
3월분	387,780	0	0	0	387,780
4~7월분	1,630,330	0	0	0	1,630,330
그외 (1~2월,8~12월분)	2,218,717	150,000	0	0	2,368,717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(1212)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139,650	142,450	375,780	371,620		
직불카드 등	비씨카드 (주) (214-81-37726)	일반	241,940	137,050	51,960	700	1,622,225	
			700	64,672	81,000	14,703		
	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 사 (FG2 81 00722)		41,200	0	0	0		
직불카드 등		에어지엔페이코 무직되 사 일반 (563-81-00723)	0	0	0	0	41,200	
	(303-61-00723)		0	0	0	0		
			270,642	174,700	12,000	80,700		
직불카드 등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(375-88-00197)	일반	206,970	183,910	356,180	77,100	2,568,402		
			333,100	252,050	405,230	215,820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10119-7107591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5-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정보경	950404-*****	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
	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	09월	10월	11월	12월	
직불카드 등	주식회사 카카오뱅크 (375-88-00197)	회사 카카오뱅크 75-88-00197) 전통시장	0	0	0	0	
			0	0	0	0	150,000
			31,000	78,000	0	41,000	
직불카드 등	(주) 부산은행 (604-81-04753)		0	5,000	0	0	
		일반	0	0	0	0	5,000
			0	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박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